

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문미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432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16.

발의자 : 문미옥 · 고용진 · 윤종오

김정우 · 신용현 · 박정

이원욱 · 신경민 · 김병관

홍의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기술사는 근무처·경력 및 학력 등(이하 “근무처등”이라 함)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,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.

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‘기관’의 범위에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.

이에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‘기관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4제3항제5호).

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“광주과학기술원”을 “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
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「울산과학기술원
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4(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) ① · ② (생 략)	제5조의4(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<u>광주과학기술원</u> 및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	5. ----- ----- ----- <u>광주과학기술원</u> 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<u>울산과학기술원</u> ----- -----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